■ 지방세법 시행규칙[별지 제40호의4서식] <개정 2022. 3. 31.>

(년 귀속)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(분리과세 소득자용)

관리번호	-

거주구분	거주자1 / 비거주자2
내·외국인	내국인1 / 외국인9
거주지국	거주지국코드

❶ 기본사항	① 성명		② 주민등록번호
	③ 주소		④ 전자우편주소
⑤ 납세지		※ 12월31일(사망한 경우 사망일, 출국의 경우 출국일)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·군·구 단위까지 적습니다. 다만,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은 경우라도 「지방세법」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	
⑥ 주소지 전화번호		⑦ 휴대전화번호	
⑧ 신고유형	35 분리과세	⑨ 신고구분	10 정기신고, 20 수정신고, 40기한후신고
❷ 환급금 계좌신고	⑩ 금융기관명		⑪ 계좌번호
❸ 세무대리인	⑫ 성 명	⑬ 사업자등록번호	⑭ 전화번호

❹ 지방소득세액의 계산

구 분		합 계	33 주택임대사업소득	69 기타소득 (계약금이 위약금·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)	83 기타소득 (가상자산 양도·대여)
⑮ 과세표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6)의 ⑱ 과세표준란의 금액					
⑯ 세율: 「지방세법」 제93조제10항제2호 및 제16항			1.4%	2.0%	2.0%
⑰ 산출세액: (과세표준⑮ × 세율⑯)					
⑱ 세액감면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6)의 ㉑ ×10%					
⑲ 결정세액: ⑰-⑱					
⑳ 가산세액: 무(과소)신고란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, 납부지연란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에 따른 가산세, 기타란에는 「지방세법」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.	무(과소)신고				
	납 부 지 연				
	기 타				
	합 계				
㉑ 추가납부세액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6)의 ㉔×10%					
㉒ 합계: ⑲+⑳(합계란 금액)+㉑					
㉓ 기납부세액					
㉔ 납부(환급)할 세액: ㉒-㉓					

❺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

㉕ 종합소득금액(분리과세 소득 제외)	□ 2천만원 초과	□ 2천만원 이하

신고인은 **「지방세법」 제95조에**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 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**「지방세기본법」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.**

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.

세무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